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245863 판결 [건물명도청구권 및 차임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24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정선회

별지